

2026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인원
계			6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요원	지방간호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자연재난과	지진방재	지방방재안전주사 (일반임기제)	1명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종자생산 및 재배포장 관리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1명
보건행정과 (경남병원선*)	임상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명
	물리치료사		1명
자치경찰위원회	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 35시간)	1명

* 경남병원선(정박지: 통영)에서 근무

2. 응시 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개별 자격요건) 다음 자격 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주 20시간 근무)**
-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 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기준(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요원	지방간호주사 (일반임기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공공기관 법인에서 감염병과 역학조사 분야 실무경력
자연재난과	지진방재	지방방재안전주사 (일반임기제)	(경 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지진재해연구, 지진특성연구, 지진피해 예방 등 지진 관련 경력* * 지진 재해 및 특성 연구, 지진피해 예방이 모두 포함된 경력이어야 함

임용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기준(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농업인력 자원관리원	종자생산 및 재배포장 관리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종자생산과 농업기계 운영관리 분야 근무경력
보건행정과 (경남병원선)	임상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법인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법인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자치경찰 위원회	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 35시간)	(경력)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비서 업무 또는 행정일반 사무* 수행 경력 * 사무실 내근 행정업무를 의미(생산 조립 등 현장업무 제외)

○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등급	주요업무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요원 (감염병관리과)	지방간호주사 (일반임기제)	•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수립 • 감염병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 감염병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지진방재 (자연재난과)	지방방재안전주사 (일반임기제)	• 지진 방재 시행계획 수립 관리 • 내진 보강 대책 수립 • 지진 연구 및 시책 발굴 • 지진·화산 매뉴얼 관리 • 지진 대피장소 및 가속도계측기 관리 • 지진 대비 훈련 및 교육 • 기타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관리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등급	주요업무
종자생산 및 재배포장 관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종자생산·공급, 재배포장 관리 및 생육조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함) • 농기계 운행, 관리 및 점검 • 기간제노동자 사역계획 수립 및 관리 •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
임상병리사 (보건행정과*) *경남병원선	지방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병원선 내 임상검사실 운영 - 검체 실시(의사처방) 및 검사 관리 - 검사 관련 장비·의약품·시약 관리 - 실적 관리 •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 진료 및 보건사업 지원
물리치료사 (보건행정과*) *경남병원선		• 병원선 내 물리치료실 운영 - 물리치료(의사처방) 시행 - 물리치료실 안전 및 의료 장비 관리 - 실적 관리 - 건강관리 지도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진료 및 보건사업 지원
비서 (자치경찰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 35시간)	• 내방객 응대 • 일정관리 및 행정업무 보좌 • 사무실 환경관리

※ 보건행정과 소관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분야는 경남병원선(정박지: 통영)에서 근무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보수 수준

○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름

(단위: 천원)

구 분	등 급	상한액	하한액
지방간호주사 지방방재안전주사	6급(상당)	86,606	57,708
지방농업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	8급(상당)	62,096	44,296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54,678 (47,843)	-

-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③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④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임용 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 검사 진행*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

- 개인별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평정항목* 점정 실시

* (평정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7.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6. 9. 2.(수)	'26. 9. 15.(화) ~ 9. 17.(목)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26. 10. 8.(목)	'26. 10. 14.(수) ~ 16.(금)	'26. 10. 29.(목)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일정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장소) 경남도청 민원접견실(본관 1층)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후 송부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연락(055-211-3524)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실시할 수 있음
-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응시 수수료)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

* (방문 접수) 원서접수 시 발급, (우편 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금 액: 5급(상당) 10,000원 / 6·7급(상당) 7,000원 / 8·9급(상당) 5,000원
- 납부방법: 원서접수 시 발급한 세외수입고지서 금융기관 납부(당일)
-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해당 증명서 첨부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연도별 활동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단,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 불가)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붙임 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시 인사위원회 별도 조회하므로 응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사·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 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서류,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 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⑪ **그 밖의 개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 예)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불합격 처리기준)
 - 면접시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면접시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 발표)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 서류(원본에 한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임용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가 있을 때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번호 외 임용시험 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임용시험 관련)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4)
 - (직무내용 관련)

임용예정부서 (근무예정지)	임용분야	연락처
감염병관리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요원	055-211-7632
자연재난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지진방재	055-211-2813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부림들길 54, 경상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종자생산 및 재배포장 관리	055-254-4722
보건행정과(경남병원선) [경남병원선 정박지: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임상병리사	055-211-4902
	물리치료사	
자치경찰위원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경남무역회관 4층)]	비서	055-211-0923

끝.